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13호 서식 신설)

나. 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관변경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다. 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15호 서식 신설)

라. 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2조 신설)

마.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

사업의 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바.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5조)

아. 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20조(협회의 정관변경 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정관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21조(수익사업의 허가신청) ① 협회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협회가 허가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 후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1부

제22조(공제사업의 인력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말한다.

1.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제 모집·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보전·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23조(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협회 공제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순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1부
6.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보험계리사, 손

해사정사 자격증 등) 1부

제24조(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회 공제사업 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제25조(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공제·보험·금융·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2.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사업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협회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협회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공제사업 운용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적립 현황 1부
3. 기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설립발기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u> <u>2. 정관 1부</u> <u>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u> <u>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u> <u>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u>

<신 설>

<신 설>

6. 창립총회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20조(협회의 정관변경 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정관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21조(수익사업의 허가신청) ① 협회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

<신 설>

서 1부

3.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협회가 허가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 후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1부

제22조(공제사업의 인력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말한다.

1.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제 모집·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보전·공

<신 설>

<신 설>

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23조(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
제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협회 공제사
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순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재
무제표 등) 1부
6.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보험계
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증 등) 1부

제24조(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
청)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
회가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협회 공제사업 승인 변경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신 설>

출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제25조(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

성 등)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
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된다.

1. 공제·보험·금융·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2.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신 설>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사업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협회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협회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공제사업 운용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 1부

2.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및 적립 현황 1부

3. 기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

영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

<신설> [별지 제11호서식]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적기업 협회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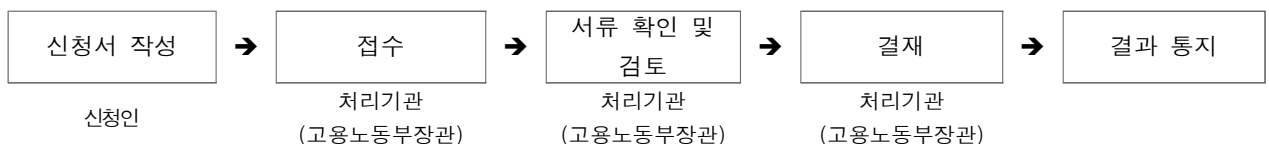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6 조의 3 제 3 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7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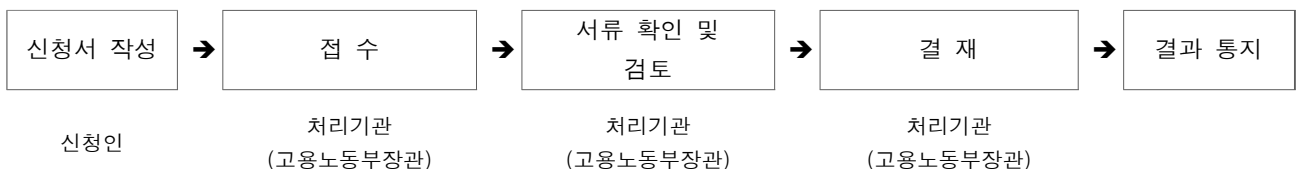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인가증

1. 협 회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협회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수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 일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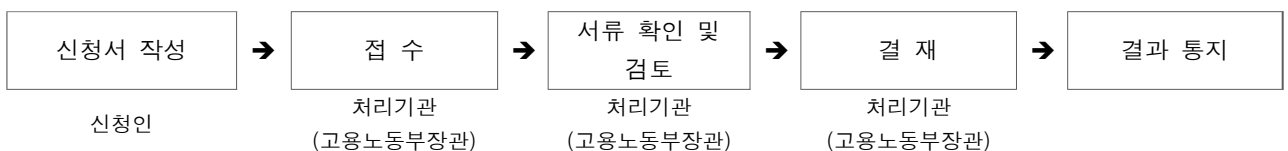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익사업의 목적·내용,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협회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변경 내용	변경 사항	변경 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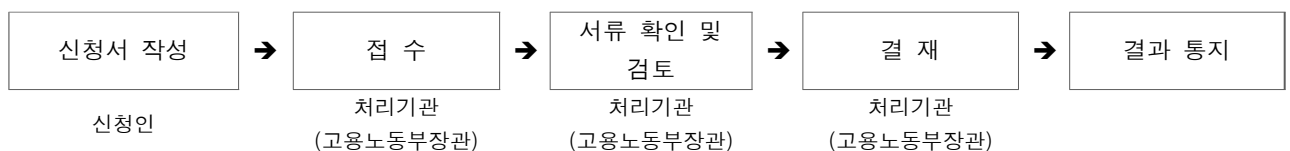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 후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설> [별지 제16호서식]

사회적기업협회 공제사업 승인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협회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총자산(원)	공제사업 수행인력(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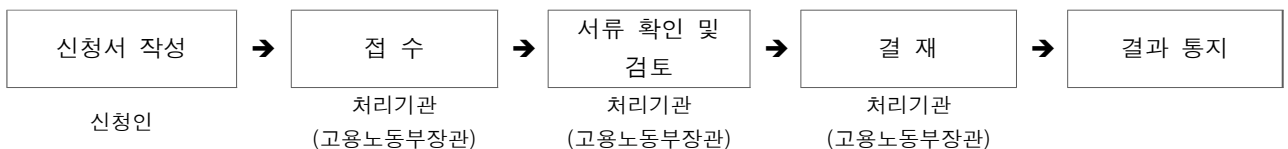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총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1부 6.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 증 등)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설> [별지 제17호서식]

사회적기업협회 공제사업 승인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협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 사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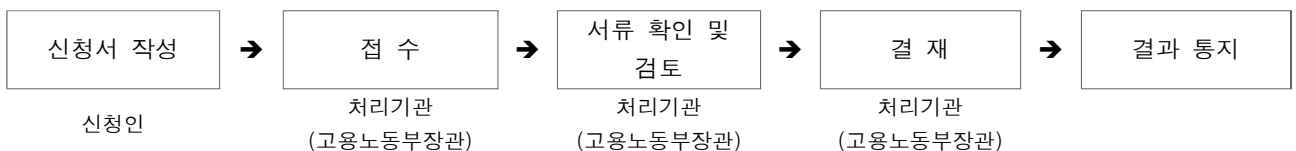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제사업규정 사본 1부 2. 공제사업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연 락 처	(044) 202 - 7420